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배현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694

발의연월일: 2020. 8. 5.

발 의 자:배현진・이명수・홍준표

추경호 · 이종성 · 김기현

조명희 · 윤한홍 · 김성원

김형동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표적 역사 왜곡 사례인 군함도처럼, 역사의 진실과는 다름에도 불구하고 외교력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는 일이나타나기 시작함.

이에 정부에서는 이론적 해설 및 디지털 매체를 통한 세계유산 설명 등 해당분야의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을 유네스코에 제안한 바 있으며 제40차 총회(19년 11월)를 통해 센터의 설립을 승인받은 바 있음.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는 각국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한 자료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세계유산에 대한 해석기 준과 원칙 마련에 기여할 예정임.

따라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안정적인 설립과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

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8조의2 신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 협약을 바탕으로 세계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산하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명 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한다.
 -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칙에 대한 연구 수행
 -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초가 되는 정보체계 및 기술 기반 구축
 - 4.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④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 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 ① 문화재 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재청장의 인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법인의 설립등기를 하여야한다.
 - ③ 설립위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한다.
 -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법률 제16932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특별법
<u><신 설></u>	제18조의2(유네스코 세계유산 국
	제 해석 설명센터의 설립) ①
	세계유산협약을 바탕으로 세계
	유산 해석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유산에 대한 대
	중의 이해와 접근성을 제고하
	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유
	네스코 세계유산 국제 해석 설
	명센터(이하 "유네스코 세계유
	산 국제센터"라 한다)를 설립
	<u>한다.</u>
	②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
	터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
	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
	<u>행한다.</u>
	1.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원
	칙에 대한 연구 수행
	2.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에 대
	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3. 세계유산 해석 및 설명의 기

 초가 되는 정보체계 및 기술

 기반 구축
- 4. 그 밖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 하는 데 필요한 사업
- ①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유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 네스코 세계유산 국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